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고,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정비(별표 8)

나. 「소득세법」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(제44조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5호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2항”을 “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별표 4 제1호나목2)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값을 합한 값(이하 “기준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이 경우 평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가. 보증금에 평가비율을 곱한 값

나. (월세금액×40)에 평가비율을 곱한 값

별표 8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1호의 기준액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되었고(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),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인상 후 기준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.

별표 8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표8제3호나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관하여는 별표8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)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.	제44조(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. <u>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.</u>	5.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
6.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	6. ----- ---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3항----- --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